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작물 안전성 확보, 농약관련업무 민원인 편의도모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 11월 19일 일부개정, 공포되고(농림수산부령 제 1086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농약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12월 5일 공포되었다(대통령령 제 13514호).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농약사용으로부터 농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제조업 및 수입업의 시설기준에 농약안전사용 조사실험실을 설치토록 했고, 시행령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약에 대한 잔류성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농약관련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이 검토한 원제의 안전성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제9조 제1항 제1호라목 및 제2항 마목).
- ◆ 현재는 품목등록증을 교부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제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처방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조처방서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단법인 농약공업협회장의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9조 제3항).

- ◆ 원제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원제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성적자료와 자재검사소장이 실시 또는 확인한 원제의 부성분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함(제10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 ◆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약 판매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농약의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3항).
- ◆ 농약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제13조 제2항 삭제).
- ◆ 농림수산부장관은 고시된 품목의 독성 및 잔류성등으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독성등에 관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명된 품목에 대하여는 농약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품목고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 2).

◆ 농약사용으로 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제조업 및 수입업의 시설기준에 농약안전사용조사실험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원제업의 등록요건 및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함(별표 2 및 별표 3).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은 직권으로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당해 농약의 약효가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약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약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불량농약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함(령 제11조의 2).

◆ 지금까지는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농약시험중 토양잔류성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토양잔류성시험을 실시하도록 함(령 제12조 제1항 단서).

◆ 지금까지는 농약제조업자 및 수입

업자에 대하여 매년 농약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약관리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10년의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농약품목의 개발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 그 적립의무를 감면하여 왔으나 그 감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적립비율을 농약판매액의 1천분의 4로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적립의무 감면기준도 조정하여 그 적립금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농약구입에 따른 농가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함(령 제17조).

◆ 농약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의 폐지에 관한 신고수리권한등을 시·도지사에게, 농약원제의 합성제조의 폐지·휴지에 관한 신고수리권한등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함(령 제22조).

◆ 현재는 토양잔류성농약의 범위를 토양중에서 농약이 반감하는 기간이 1년이상인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반감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령 별표 3).

◆ 현재는 어류에 대한 실험결과만으로 수질오염성농약의 범위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실험대상을 어류를 포함하여 수서생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령 별표 3).